제 2019-113호

중국

BJ 펑티모 동영상, 음악저작권 침해사건 최종 판결 나와

북경사무소

현황

ㅇ 최근 ‘유튜브(Youtube)’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눈에 띄게 증가함과 동시에 유튜버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 그중 ‘음악’ 콘텐츠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임

ㅇ 중국에서는 유튜브 사용이 불가능해 ‘더우위(斗鱼, Douyu) 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더우위 TV에서 ‘고양이송’으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펑티모(冯提莫, Fengtimo)가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ㅇ 작년 4월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펑티모의 방송영상이 음저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 ‘연인심(恋人心)’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우한 더우위 온라인 과기회사(武汉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더우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당시 1심 법원은 더우위로 하여금 음저협에 손해배상 및 합리 비용 총 5,200위안(한화 약 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주요 내용

ㅇ 이 사건의 발단은 더우위의 유명 BJ 펑티모가 생방송 중 '연인심'이라는 노래를 사용했고, 펑티모가 생방송을 마치자 곧바로 더우위 측에서 해당 영상을 자사 생방송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청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했기 때문임

- 참고로 '연인심'의 작사가 장차오(张超)는 중국 음저협과 '음악저작권계약'을 체결한 회원이기 때문에 음저협이 '연인심'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중국 음저협은 더우위가 직접적으로 해당 음악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더우위가 업로드한 해당 생방송의 다시보기 영상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더우위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결함

ㅇ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더우위는 상소를 제기하면서 "문제 된 영상의 저작자는 BJ 펑티모이며 우리는 중립적인 기술 및 정보저장서비스만을 제공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 또는 단독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ㅇ 상소심 재판을 담당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더우위와 BJ 펑티모 사이에 비록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BJ 펑티모는 더우위 회사를 위하여 문제의 영상물을 창작했으며, 더우위 회사는 문제 된 영상의 권리자로서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더우위가 직접 제공한 영상물 중에 문제 된 노래 '연인심'이 담긴 영상물이 존재하는데 이는 음저협이 향유하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원심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림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2010년 유튜브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이용자가 음저협에 신탁된 음악을 이용해 동영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함. 이 경우 해당 동영상이 창출한 광고 수익이 음저협에 전달되며 이를 음저협 회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어 유튜버들이 안심하고 음악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우리와 같은 제도가 없음

- 이번 중국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드는 의문점은 BJ 펑티모가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이 더우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임. 즉 중국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펑티모와 더우위 회사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지만, "BJ 펑티모는 더우위 회사를 위하여 문제의 영상물을 창작했다"라고 하여 이를 업무상 저작물 또는 위탁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이 더우위에 있다고 판단함. 물론 중국은 우리와 달리 사업상 저작물인 경우, 법령 혹은 계약 등에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직원에게 저작권을 인정함. 또한, 만약 이를 위탁저작물로 볼 때도 특약이 없는 경우 수탁자가 저작권을 가짐.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플랫폼 사인 더우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이는데, 조사결과 더우위는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BJ들의 방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함

출처

- 관찰자망(观察者网)
  - https://www.guancha.cn/ChanJing/2019_08_05_512296.shtml